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의료기관용)

2023. 12.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차 례 CONTENTS

제1장 사업 개요 ····· 1

1. 추진배경 및 목적 ····· 1
2. 관련 근거 ····· 1
3. 사업 주요내용 ····· 2
4. 추진체계 및 역할 ····· 4

제2장 사업 세부내용 ····· 6

1. 시범사업 개념 및 모형 ····· 6
2. 서비스 절차 등 ····· 8

제3장 요양 급여비용 산정 ····· 12

1. 요양 급여 기준 ····· 12
2. 산정지침 ····· 13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15

차 례 CONTENTS

제4장 요양 급여비용 청구방법 ····· 16

1. 청구원칙 ····· 16

2. 명세서 작성요령 ····· 17

3. 보완 및 추가청구 ····· 20

제5장 시범의료기관 준수사항 ····· 21

1. 일반 준수사항 ····· 21

2. 수가 등 관련 준수사항 및 제재조치 ····· 25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 27

[별첨2] 취약지역 ····· 46

[별첨3] 처방금지 의약품 목록 ····· 58

제정 2023.5.30. (2023.6.1. 시행)
개정 2023.8.31. (2023.9.1. 시행)
개정 2023.12.6. (2023.12.15. 시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의료기관용)

제1장 사업 개요

제2장 사업 세부내용

제3장 요양 급여비용 산정

제4장 요양 급여비용 청구방법

제5장 시범의료기관 준수사항

제1장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가.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방문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통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제고에 기여함

나. 비대면진료를 도입하여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 후에도 의료기관 직접 방문이 어려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관련 근거

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나. **(국정과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67번)

3. 사업 주요내용

가. 사업 내용

○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하 '의사'라 함)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찰 및 처방 등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나. 사업 대상

1) 대상 기관

○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이하 '시범의료기관'이라 함)과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시범약국'이라 함)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

2) 대상 보건의료인

○ 시범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시범약국에 소속된 약사

3) 대상 환자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진료방법**으로,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구분			적용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예외적 허용	취약지역	▪ **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 ▪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취약시간대	▪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취약계층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병원급 의료기관	대면 진료 경험자	희귀질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다. 사업 기간

○ 2023.6.1.부터 시행

4.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수행 주체별 역할

1)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사업 추진 총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이라 한다)

○ 시범사업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 요양 급여비용 접수·청구, 비대면진료비 청구자료 통계 및 분석

○ DUR 점검 및 분석

3) 시범기관(시범의료기관, 시범약국)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서비스 안내 및 제공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용 청구 등

4)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 요양 급여비용 지급

○ 대상환자 자격 확인

○ 요양급여비용 환수

5)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쟁점 및 해외사례 검토 등 제도화 정책 연구 지원

○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 등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시범사업 홍보, 대국민 만족도 점검 등

7) 의료급여 보장기관(지방자치단체)

○ 의료급여비용 환수

나. 추진 체계도

1) 시범사업 운영체계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총괄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 급여비용 지급
- 대상환자 자격 확인
- 요양급여비용 환수

※ 의료급여비용 환수 : 의료급여 보장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 요양 급여비용 접수·청구
- 비대면진료비 청구자료 통계 및 분석
- DUR 점검 및 분석

시범기관

-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
- (약국) 비대면조제 서비스 제공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제도화 정책 연구 지원
-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시범사업 홍보 등

2) 시범사업 운영관리

○ 필요 시 시범사업 운영방안, 진행경과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공단, 관련 학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제2장

사업 세부내용

1. 시범사업 개념 및 모형

가. **(비대면진료 서비스)** 요양기관 방문이 어려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의료기관의 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찰 및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나. **(대상환자)** 감염병 확산 우려 또는 의료기관 방문 어려움 등으로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 중 시범의료기관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여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1)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가 원칙**
→ **①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비대면진료 가능**
◇ **의료접근성이 낮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②,③,④에 해당할 경우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 가능**

① **(대면진료 경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② **(취약지역 거주자) 섬·벽지 지역**(「보험료 경감 고시」 별표1), **응급의료 취약지**(「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제2조) 거주하는 환자 … **[별첨2] 목록**

③ **(취약시간대 환자)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야간**(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에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

④ **(취약계층)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등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에 따른 제1급 또는 제2급 감염병 확진 환자 중 격리(권고 포함) 중인 환자)

2)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 **(희귀질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4에 따른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 필요 환자)** 동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 결과의 설명에 한함)

2. 서비스 절차 등

가. 서비스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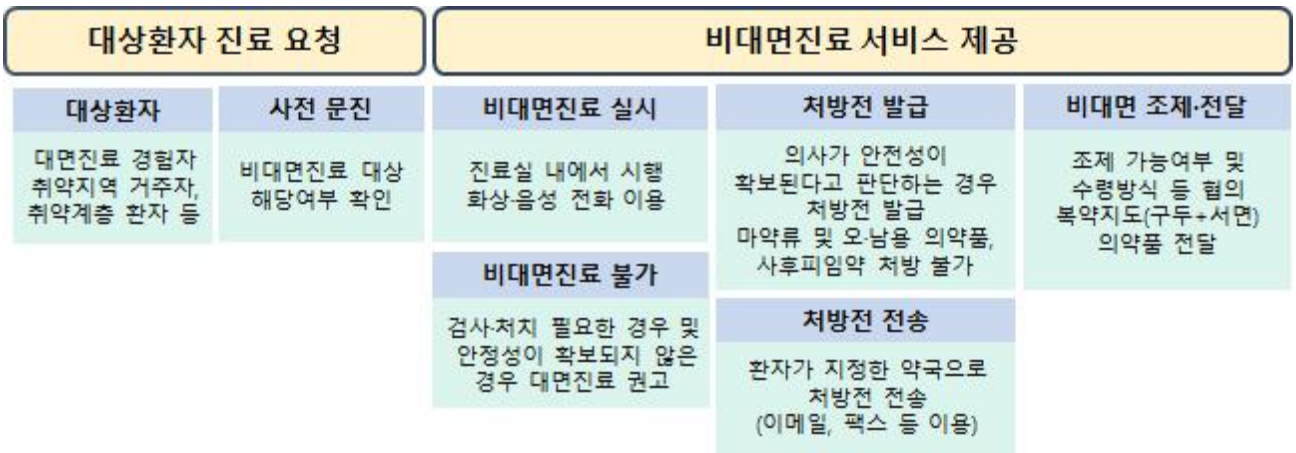

나. 서비스 상세내용

1) **(비대면진료 요청)** 비대면진료를 희망하는 환자는 시범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요청

○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가 비대면진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비대면진료 실시 불가

- **(예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전화를 걸어 건강상태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설명 후 비대면진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

○ 환자는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서비스 절차 등 시범사업 지침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비대면진료 신청

2) **(사전 문진)**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제5장1.가.본인확인의무에 따라 해당 대상자의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여부 확인

○ 환자는 시범의료기관에 증상, 건강상태 등을 포함하여 비대면 진료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예시)** 증상, 건강상태, 진료 희망사항 및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유형(대면진료 경험자, 취약지역 거주자 등)에 대한 정보

* 대면진료 경험 예외 적용환자 수진자 자격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자격확인서비스」에서 가능

3) **(비대면진료 실시)**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단 및 처방 등 비대면진료 실시

○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원하여 대면진료할 것을 권고

- **(예시)** 청진, 촉진, 대면 검사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환자의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증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등

  - 이 경우, 의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진찰 등이 실시된 경우 진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

  - 환자는 의사의 대면진료 권고 시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 방문 필요

<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 >

❶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 대면진료가 원칙

❷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1차적으로 선택**

❸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향후 대면진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거주지 주변의 가까운 의료기관 선택**

❹ 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대면진료를 권고**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 방문 진료**

○ 대면진료 권고, 진료 후 처방여부 등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 환자는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여 내원 등 결정사항 이행

- **(부적절한 사례 예시)** 환자가 의사의 대면진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방식 요청, 특정 의약품 처방 요구, 처방전 미발급을 사유로 진료비 수납 거부 등

○ 비대면진료 시 화상통신·전화 등을 활용하여야 하며, 단순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한 비대면진료는 불가

-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 불가 등) 등은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 허용

○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은 대면진료 절차 준용

○ 적절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범의료기관 내에서 비대면진료 실시

4) **(본인부담금 수납)**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약국)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5) **(처방전 발급)** 비대면진료 실시 결과,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 발급 가능

○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처방 불가**(DUR 점검 시 확인 가능)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

*** 사후피임약: 레보노르게스트렐(0.75mg, 1.5mg), 울리프리스탈(30mg) 함유제제

○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1회 처방 시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처방 가능

○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 시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비대면진료"를 기재

6) **(처방전 전송)** 의사는 환자와 협의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처방전 전송 방식 결정

○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직접 전송

* 환자는 환자용 처방전에 한해 수령 가능

- 환자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에서 처방전 다운로드 불가

○ 의사는 약국에서 투약 관련 사항 확인 및 복약지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의료기관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환자의 전화번호 등 기재

* 중복 조제, DUR 관련 사항 등 확인, 환자 대상 복약 관련 사항 안내 등

7) **(처방약 조제, 복약지도 및 수령)** 약사는 환자와 협의하여 조제 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결정

○ 사전 상담을 통해 처방약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 여부 포함), 수령방식 등을 환자와 사전협의

- 수령 방식은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으로 결정하되, 재택 수령 방식은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자에 한함),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함

○ 협의된 내용에 따라 조제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후, 환자에게 의약품 전달

○ 조제기록부에 비대면조제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등을 기재

제3장

요양 급여비용 산정

1. 요양 급여 기준

가. 요양 급여의 대상

1) 급여의 담당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범의료기관

2) 급여의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비대면진료를 요청한 환자로 의사에게 비대면진료의 필요성 및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

나. 요양급여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따르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급여 대상'(별표2)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한다.

다. 급여의 비용부담

○ 건강보험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 의료급여의 부담은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2. 산정지침

가. 시범의료기관의 의사가 대상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제1장의 '가-1 외래환자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한다.

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구분·산정한다.

(1) 주간 : 평일 09시~18시, 토요일 09시~13시

(2) 야간 :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20시, 익일 07시～09시

(3) 심야 : 평일 및 토요일 20시～익일 07시

(4) 공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다. 비대면진료 후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비대면진료 후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비대면진료 후 산정된 ‘가-1 외래환자 진찰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월 2회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또는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과 동시 산정하지 아니한다.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23년 점수당 단가: 의과 의원 92.1원, 의과 병원 79.7원, 보건의료원 91.0원
치과 의원·병원 93.0원, 한의원·한방병원 95.4원)

분류 번호	코드	분류	점수 (점)	금액(원)		
				의원	병원	보건 의료원
비대면 진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주 : 야간[2], 심야[3], 공휴[4]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 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IC001 ~IC004	가. 의과	40.34	3,720	3,220	3,670
	IC011 ~IC014	나. 치과	33.14	3,080	3,080	3,020
	91001 ~91004	다. 한의과	28.79	2,750	2,750	2,620

제4장

요양 급여비용 청구방법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요양 급여비용 청구방법이며,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함

1. 청구원칙

가.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의 선택)** 시범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 중 한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나. **(청구시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수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다. **(심사청구서)** 시범사업내역(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다른 진료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한다.

라. **(명세서의 구분 및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 내역(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다른 진료내역)은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로 작성한다.

2. 명세서 작성요령

가. 의료기관 명세서 작성요령

1) 명세서 일반내역

○ **(요양급여비용총액)** 비대면진료와 관련된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 금액은 '요양급여비용총액1'에 합하여 기재한다.

2) 명세서 상병내역

○ **(내원일자)** 비대면진료를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다.

3) 명세서 진료내역

○ **(항목번호)**

- **(진찰료)** '01항'(진찰료)의 '01목'(초진) 또는 '02목'(재진)에 기재한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한다.

○ **(면허종류 및 번호)** 외래환자진찰료의 면허 종류, 면허번호란에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 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4) 명세서 특정내역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 해당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 환자 유형을 기재한다.

-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한다.

대상환자 유형	기재내용
섬·벽지 거주자	비대면/A
등록 장애인	비대면/B
감염병 확진 환자	비대면/C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비대면/D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 (~'23.12.14. 진료분까지)	비대면/E
대면진료 미경험자(취약시간대) ('23.12.15. 진료분부터~)	비대면/F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23.12.15. 진료분부터~)	비대면/G

○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전 발행 시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CT003(비대면처방)에 'Y'를 기재한다.

구분 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CT003	비대면 처방	X(1)	시범의료기관의 의사가 대상환자에게 비대면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Y'를 기재

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table>
<tr><th>항목</th><th>세부작성요령</th></tr>
<tr><td>비대면진료
시범사업</td><td>□ (예시1) 의원에서 주간에 대면진료 경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경우
- 비대면 진찰(재진)을 시행한 경우 '외래환자 진찰료'는 01항 02목에 기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01항 03목에 기재
- 해당 진찰료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란에 실제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기재

<진료내역>
<table>
<tr><th>항</th><th>목</th><th>줄
번호</th><th>코드
구분</th><th>코드</th><th>단가</th><th>일투</th><th>총투</th><th>금액</th><th>면허
종류</th><th>면허
번호</th></tr>
<tr><td>01</td><td>02</td><td>0001</td><td>1</td><td>AA254</td><td>12,380</td><td>1</td><td>1</td><td>12,380</td><td>1</td><td>12345</td></tr>
<tr><td>01</td><td>03</td><td>0002</td><td>1</td><td>IC001</td><td>3,720</td><td>1</td><td>1</td><td>3,720</td><td>-</td><td>-</td></tr>
</table></td></tr>
</table>

항목	세부작성요령

□ **(예시2) 의원에서 평일 19시에 대면진료 미경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경우**

- 19시에 진료 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원-야간' 수가 청구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 해당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에 '비대면/F' 기재

<진료내역>

항	목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번호
01	01	0001	1	AA154	17,320	1	1	17,320	1	12345
01	03	0002	1	IC002	3,720	1	1	3,720	-	-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코드	특정내역						
2	0002	JX999	비	대	면	/	F		

□ **(예시3) 의원에서 공휴일에 섬·벽지 거주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경우**

- 공휴일에 진료 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원-공휴' 수가 청구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 해당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JX999에 '비대면/A' 기재

<진료내역>

항	목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번호
01	01	0001	1	AA154	17,320	1	1	17,320	1	12345
01	03	0002	1	IC004	3,720	1	1	3,720	-	-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코드	특정내역						
2	0002	JX999	비	대	면	/	A		

□ **(예시4) 병원에서 주간에 희귀질환자에게 비대면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 비대면진료 후 발행된 처방전에는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CT003에 'Y' 기재

<진료내역>

항	목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면허종류	면허번호
01	02	0001	1	AA255	12,060	1	1	12,060	1	12345
01	03	0002	1	IC001	3,220	1	1	3,220	-	-

<처방내역>

처방전발급번호	코드구분	코드	1회투약량	일투	총투
2023060100001	3	650000001	1	1	7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처방전발급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4	2023060100001	CT003	Y

3. 보완 및 추가청구

가. 보완청구

○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불능 처리된 건에 대해 해당 사유를 보완하여 보완청구한다.

나. 추가청구

○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 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로 청구한다.

다. 기타

○ 보완 및 추가청구 시 기재하는 구분코드 등 청구방법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따른다.

제5장

시범의료기관 준수사항

1. 일반 준수사항

가. 본인확인 의무

○ 시범의료기관은 환자의 본인여부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 확인결과와 진료 실시 내용은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대면진료 경험 예외 적용환자 수진자 자격조회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자격확인서비스」

< 대상환자 여부 확인방법 >

의료기관	대상환자		기준	확인방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기록 확인 ▪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
	예외적 허용	취약 지역	▪ **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 ▪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 (환자) 아래의 방법 중 선택 ①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의료 취약지 해당 여부 확인 ②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문의 ▪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격확인서비스 확인
		취약 시간대	▪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 (환자, 의료기관) 진료 일자, 진료시간 확인

		취약 계층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	■ (환자)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등 ■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서비스 확인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환자)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등 ■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서비스 확인
			■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 (환자) 격리통지서, 문자 등 격리사실 통보내용 ■ (의료기관) 환자가 제시한 격리통지서, 문자 등 확인
병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경험자	희귀 질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기록 ▸'산정특례 등록내역 → 산정특례 자격여부 ■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 (대면진료 경험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서비스 (산정특례)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기록 ■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

○ 의사는 환자가 의사의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정보 등을 요청할 경우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본인확인은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환자와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본인 확인 방법(예시) >

-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
-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 **의사의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 사원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 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나.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행위 금지

○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원칙의 예외를 허용한 것으로 진료환경은 대면진료와 동일하나, 진료방식만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진단을 위해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면진료를 권고하여야 한다.

○ 의료법 상 허가·신고된 의료기관 내 진료실에서 비대면진료에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환자가 식별 가능한 수준의 진료환경 (통신 속도, 진료실 내 조도 등) 등을 갖추고 진료하여야 한다.

<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사례 예시 >

ㅇ 의료기관 밖(재택, 차량, 실외 등)에서 진료하는 행위(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

ㅇ 진찰 없이 환자의 요청에 의해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하는 행위(의료법 제17조의2 위반)

ㅇ 화상·음성통신 없이 문자메세지, 메신저만으로 처방하는 행위(지침 위반으로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에 해당)

ㅇ 의사가 아닌 자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거나 처방하는 행위(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

다. 비대면진료 관련 전담 기관 운영 금지

○ 시범의료기관은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만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대면진료 거부 시 의료법 제15조 위반)

○ 시범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 내 진료건수 중 월 비대면진료 건수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특정 의약품 처방 금지(별첨3)

○ 비대면진료 후 처방이 필요한 경우라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 사후피임약***을 처방할 수 없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 사후피임약: 레보노르게스트렐(0.75mg, 1.5mg), 울리프리스탈(30mg) 함유제제

○ 비대면진료 후 처방이 필요한 경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 처방 금지 의약품, 중복처방, 병용금기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고 처방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 등

마.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관련 협조사항

○ 시범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해당 플랫폼 업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환자 본인 여부 확인 가능여부, 환자가 시범의료기관 선택 가능한지 여부, 시범의료기관 관련 정보 제공의 적절성 등

2. 수가 등 관련 준수사항 및 제재조치

가. 요양급여 안내

○ 시범의료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시범사업 및 요양급여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 시범의료기관은 당해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기에 쉬운 장소(의료기관 입구, 진료비 수납창구, 온라인 매체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나. 자료제출의 의무

○ 시범의료기관은 위탁연구, 모니터링, 사업평가 등을 위한 자료요청 시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연구과제 참여 협조 의무

○ 시범의료기관은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연구진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라. 법령 준수 의무

○ 시범의료기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서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개인정보 보호 의무

○ 시범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 건강 및 질병정보 등을 보호할 책임을 지닌다.

○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범의료기관은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을 갖춘 시스템과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바. 제재조치 등

○ 시범의료기관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적절한 시범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범사업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다.

○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급여 기준을 위반하여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의 전부를 공단(의료급여비용은 보장기관)에 반환하여야 하며, 공단(의료급여비용은 보장기관)은 부당금액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위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을 시범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의료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수가 등 지급을 유예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1. 시범의료기관 관련

Q1 시범사업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별도의 신청 및 지정 단계가 없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 시행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2 대상기관에 보건소는 포함되나요?

○ 지역보건법 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시행해야 하나요?

○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의료법 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2. 대상환자 관련

Q4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환자의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할 경우 진료 기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합니다.

▶ **(예시)** 대면진료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사항 등

Q5 시범사업 대상환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상환자가 아니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없나요?

○ 대상환자의 기준과 확인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본 시범사업은 대상환자를 제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환자가 아닌 경우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대상환자 여부 확인방법 >

의료기관	대상환자		기준	확인방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기록 확인 ▪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
	예외적 허용	취약 지역	▪ **섬·벽지 거주자**(「보험료 경감 고시」) ▪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 (환자) 아래의 방법 중 선택 ①환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의료 취약지 해당 여부 확인 ②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문의 ▪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 공단 자격확인서비스 확인

		취약 시간대	■ **(휴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 (환자, 의료기관) 진료 일자, 진료시간 확인
		취약 계층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	■ (환자)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등 ■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서비스 확인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환자)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등 ■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서비스 확인
			■ **감염병 확진 환자**(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 (환자) 격리통지서, 문자 등 격리사실 통보내용 ■ (의료기관) 환자가 제시한 격리통지서, 문자 등 확인
병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경험자**	**희귀 질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기록 ▸'산정특례 등록내역 → 산정특례 자격여부 ■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 (대면진료 경험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서비스 (산정특례)
		수술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동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진료 및 투약정보' → 의료기관 방문기록 ■ (의료기관) 의무기록 확인

Q6	취약지역은 어디를 의미하나요? 적용기준이 뭔가요?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6호 「보험료 경감고시」('23.1.1. 시행)의 제3조제1항에 따른 별표1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6호「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21.12.31. 시행) 제2조에 규정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 **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섬·벽지지역 경감)** 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별표1의 섬·벽지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제5조3항에 따라 경감을 받는 가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세대별 또는 가입자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진료일 기준**「보험료 경감고시」별표1 및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제2조에 규정된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환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구분	지역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1.인천	2	강화군, 옹진군
2.경기	5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3.강원	15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4.충북	8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5.충남	11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6.전북	9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7.전남	17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8.대구	1	군위군
9.경북	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10.경남	14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1.제주	1	서귀포시

Q7	휴일 또는 야간시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며,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도 적용됩니다.

○ 야간은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입니다.

Q8	공휴일 또는 야간시간에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가 진료를 받았던 동일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다만,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경우라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또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에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소아 환자(18세 미만) 등 휴일·야간 비대면진료를 하는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처방이 가능합니다.

Q9	병원급 의료기관인데 취약지역 거주자나 취약시간대(휴일·야간) 환자에게 비대면진료 가능한가요?

○ 동일 의료기관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30일 이내)에 한해 가능합니다.

○ 2023.12.15.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따른 대상환자 범위 조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Q10	희귀 질환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동일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1년 이내)이 있는 환자 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별표4에 따른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를 말합니다.

○ 동일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Q11	우리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이 없거나, 대면 진료 후 6개월이 지난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나요?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 중 취약지역 거주자, 취약시간대(휴일·야간)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격리(권고 포함)기간 중))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 그 외 환자 중 대면진료 후 6개월이 지난 환자는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면진료를 받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Q12	타 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아오던 환자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우리 요양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 동일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나, 타 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아왔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 진단서, 의뢰서 등의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없다면 최초 1회 대면진료를 실시한 후에 가능합니다.

Q13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감염병 확진 환자는 어떤 감염병으로 확진된 환자를 의미하나요?

○ 감염병예방법 상 제1급, 제2급 감염병으로 확진된 자를 의미합니다.

▶ **(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톨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2급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E형간염, 엠폭스

Q14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데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 감염병 확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므로 의심 증상만으로는 비대면진료는 불가능합니다.

- 다만, 확진 후 동일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 이후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예) A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확진 후 B 이비인후과 또는 C 피부과에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Q15	코로나19 확진 환자인데 타 의료기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요?

○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 이후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19는 '23.8.31.부터 4급 감염병으로 전환(「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조치)되어 확진되더라도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 다만, 대면진료를 통해 확진한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Q16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등의 경우 어떻게 비대면진료를 받나요?

○ 화상통신을 통해 본인 확인, 진찰 등을 실시하고 환자의 보호자(가족·지인)가 의사소통을 위해 환자를 대신하여 상담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Q17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기준이 뭔가요?

○ 수술 및 그에 동반되는 치료행위 후 의료기기를 신체에 부착하였거나 검사를 시행하여 결과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진료과정에서 진단을 위해 검사만 실시하였거나, 수술·치료 후에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단순 검사결과 통보는 제외됩니다.

- ▲ 대면진료를 통해 수술 및 그에 동반되는 치료행위가 있었고,
  - ▲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요청하였으며(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전화로 검사결과 설명 불가),
  - ▲ 의사가 비대면으로 문진·시진 등 진찰 행위를 하는 과정에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검사 결과의 설명이 동반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 ▲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의 경우 화상진료가 필수적이며, 의사가 영상을 통해 실질적으로 작동상태 점검이 가능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3. 비대면진료 적용범위 관련

Q18 입원 중인 환자가 타 의료기관으로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외래진료시 산정하는 수가로 요양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 입원 중인 환자는 타 기관으로의 진료의뢰 절차에 따라 대면진료를 해야 합니다.

Q19 진단서 및 의뢰서 발급을 위한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 각종 증명서(진단서 및 의료급여의뢰서 등) 발급은 대면진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비대면진료를 통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4. 수가 산정기준 관련

Q20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할 수 있나요?

○ 비대면진료 시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에 각종 가산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Q21	동일 기관의 2인 이상의 의사에게 비대면진료 시행시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같은 날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1회만 산정합니다.

○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Q2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다른 행위 수가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나요?

○ 비대면진료만 실시한 경우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를 같은 날 시행한 경우 대면진료 시 시행한 행위 수가는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산정 불가항목 예시)** 정신요법료, 가-14 만성질환관리료,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Q23	타 시범사업 대상환자 관리를 위한 비대면 상담을 시행한 경우 별도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진찰료 및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타 시범사업에서 대상 환자에게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비대면 환자 관리를 시행한 경우, 비대면진료 진찰료 및 시범사업 관리료와 중복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 환자의 요청에 따라 증상 관리, 의료 장비 관리, 응급 상황 대처 등의 내용을 비대면으로 시행한 경우 해당 시범사업의 '환자 관리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비대면진료 진찰료'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동시 산정 불가

Q24	대면진료 시 시행한 검사 결과를 전화로 통보 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 단순한 검사 결과 통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검사 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문진·시진 등 진찰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 예) 의사가 아닌 자가 유선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환자 진찰 없이 단순히 검사결과만 통보하는 경우 등은 제외

Q25	환자가 원하는 횟수만큼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나요?

○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환자에게 한 달(월)에 최대 2회까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예) 6월(2회), 7월(1회), 8월(2회)

5. 본인부담률 관련

Q26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의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본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보다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특정기호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해당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65세 이상 건강보험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 비대면진료를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

▶ **(예시)** 의원 초진진찰료 17,320원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3,720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 21,040원, 20% 본인부담률 적용한 4,200원 본인부담

6. 청구방법 관련

Q27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별도의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데 진료시간에 따라 수가코드를 다르게 청구해야 하나요?

○ 수가코드 분류는 해당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 시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것으로, 실제 진료시간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로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Q28 비대면진료 시행 당일 대면진료 시행시 진찰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같은 날 동일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를 중복으로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1회(대면진찰료와 비대면진찰료 중 택1)만 청구합니다.

○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대면(진찰료+의료질평가지원금), 비대면(진찰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중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9 비대면진료 시행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는 산정 가능하며, 입원명세서에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Q30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청구방법은?

○ 건강보험(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 환자의 경우, 명세서 일반 내역 '공상 등 구분'란에 '4 또는 B'를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Q3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에 대상환자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기재해야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산정 시 대상환자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줄단위 특정내역 JX999에 해당하는 유형을 기재합니다. 단, 아래의 일곱 가지 유형 이외의 대상환자는 JX999를 기재하지 않고 청구합니다.

* 타 JX999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여 기재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대상환자 유형	기재내용
섬·벽지 거주자	비대면/A
등록 장애인	비대면/B
감염병 확진 환자	비대면/C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비대면/D
18세 미만의 소아 환자 (~'23.12.14. 진료분까지)	비대면/E
대면진료 미경험자(취약시간대) ('23.12.15. 진료분부터~)	비대면/F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23.12.15. 진료분부터~)	비대면/G

- 다만, 환자가 여러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예: 섬·벽지 거주자가 등록 장애인인 경우) '/'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유형을 모두 기재합니다.

<진료내역>

항	목	줄번호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2	0001	1	AA254	12,380	1	1	12,380
01	03	0002	1	IC004	3,720	1	1	3,72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코드	특정내역								
2	0002	JX999	비	대	면	/	A	/	B		

Q32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전 발행 시 명세서 작성요령은?

○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전 발행 시 처방내역단위 특정내역 CT003 (비대면처방)에 'Y'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분 코드	특정 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CT003	비대면 처방	X(1)	시범의료기관의 의사가 대상환자에게 비대면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Y'를 기재

Q33	비대면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 시 명세서 처방전 관련 기재사항은?

○ 시범의료기관의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 시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비대면진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7. DUR 점검 관련

Q34	비대면진료 시행 후 의약품(비급여 포함)을 처방할 경우 DUR 점검을 실시해야 하나요?

❍ 비대면 진료시에 마약류, 오남용 우려의약품, 사후피임약 등 처방금지 의약품, 중복처방, 병용금기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DUR을 통해 확인하고 처방(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Q35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목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DUR 알리미를 통해 해당정보 확인 링크(요양기관업무포털 등)를 제공합니다. 또한, 마약류(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실시간 목록은 '의약품 통합 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성분)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8. 기타

Q36 비대면진료시 원내조제가 가능한가요?

○ 비대면진료는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와 협의한 방식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한 후, 약국에서 조제·판매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 따라서 비대면진료시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는 불가능합니다.

별첨2 취약지역

1. 섬지역 (「보험료 경감 고시」 제3조 관련)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인천	서구	원창동	세어도
	중구	무의동	팔미도
	옹진군	북도면	신도, 시도, 장봉도, 모도
		연평면	대연평도, 소연평도
		백령면	백령도
		대청면	대청도, 소청도
		덕적면	덕적도, 소야도, 문갑도, 백아도, 울도, 굴업도, 선미도, 지도
		자월면	자월도, 이작도, 승봉도
		영흥면	부도
	강화군	삼산면	서검도, 미법도
		서도면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 말도
경기	안산시	풍도동	풍도, 육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도, 입파도
충남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 월도, 허육도, 육도, 추도, 소도, 외연도,
			녹도, 호도,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대화사도, 시루섬
	서산시	대산읍	웅도
		지곡면	우도, 분점도
		팔봉면	고파도
	홍성군	서부면	죽도
	태안군	안면읍	외도, 내파수도
		근흥면	가의도, 옹도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연도, 어청도
			관리도, 방축도, 비안도, 명도,
			말도, 두리도, 죽도
	고창군	부안면	죽도
	부안군	위도면	위도, 식도, 거륜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전남	무안군	망운면	탄도
		해제면	저도
	목포시	달동	달리도, 외달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율도동	율도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 자봉도, 개도, 제도, 상화도, 하화도,
			사도, 추도, 여자도, 송여자도,
		남　면	금오도, 수항도, 안도, 부도, 대두라도, 소두라도,
			나발도, 대횡간도, 소횡간도, 연도
		삼산면	거문도, 서도, 동도, 초도, 손죽도, 소거문도, 평도, 광도
		율촌면	송도, 대늑도, 소늑도
		화양면	운두도
		월호동	대경도, 소경도, 야도
		시전동	장도
		삼일동	삼간도
		돌산읍	송도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 상화도, 하화도, 득량도
		도화면	죽도
		포두면	첨도
		봉래면	수락도, 애도
		과역면	진지도
		남양면	우도
		금산면	연홍도
	보성군	벌교읍	장도, 동도, 지주도, 해도
	진도군	진도읍	저도
		고군면	금호도
		의신면	모도, 구자도
		조도면	상조도, 하조도, 서거차도, 동거차도, 옥도, 가사도,
			소마도, 라베도, 맹골도, 성남도, 죽항도, 독거도,
			청등도, 모도, 진목도, 대마도, 눌옥도, 외병도,
			내병도, 관매도, 관사도
	해남군	화산면	하마도, 상마도, 중마도
		송지면	어불도
	강진군	도암면	가우도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도, 하낙월도, 임병도, 송이도
			각이도, 석만도, 영외도, 신기도, 오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죽도, 안마도
	완도군	금일읍	금일도, 원도, 신도, 소랑도, 장도, 충도
			다랑도, 섭도, 우도, 황제도
		노화읍	노화도, 마삭도, 노록도, 넙도, 서넙도, 어룡도, 대장구도, 대재원도, 후장구도, 죽굴도, 마한도
		군외면	사후도, 고마도, 토도, 흑일도, 백일도, 서화도, 동화도, 양도
		신지면	모항도
		고금면	넙도, 초완도
		청산면	청산도, 장도, 여서도, 소모도, 대모도
		소안면	소안도, 당사도, 횡간도, 구도
		금당면	금당도, 화도, 허우도, 비견도
		보길면	보길도, 예작도
		생일면	생일도, 덕우도
	신안군	지도읍	어의도, 대포작도, 소포작도, 선도, 율도
		증도면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화도
		임자면	재원도, 부남도
		비금면	본도, 상수치도, 하수치도
		도초면	본도, 우이도, 동소우이, 서소우이, 죽도
		흑산면	본도, 영산도, 장도, 다물도, 대둔도, 홍도,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 만재도, 가거도
		하의면	본도, 개도, 장병도, 문병도, 능산도, 장재도, 신도,
			대야도, 옥도
		신의면	본도, 고사도, 평사도, 기도
		장산면	본도, 마진도, 율도, 백야도, 막금도
		안좌면	박지도, 반월도, 사치도, 부소도, 요력도
		암태면	당사도, 초란도
		압해면	가란도, 효지도, 외안도, 고이도, 꽃섬,
			항마도, 매화도, 마산도
경북	울릉군	울릉읍 등	울릉도, 죽도, 독도
경남	사천시	동서동	신수도, 신도, 저도, 마도
		서포면	진도, 월등도
	진주시	귀곡동	귀곡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섬)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곤리도, 학림도, 연대도, 만지도
			추도, 오곡도, 송도, 저도
		용남면	지도, 수도, 어의도
		도산면	연도, 읍도
		광도면	입도, 저도
		욕지면	욕지본도, 국도, 봉도, 초도, 갈도, 연화도, 우도,
			상노대도, 하노대도, 납도, 두미도
		한산면	한산본도, 비산도, 좌도, 추봉도, 용초도, 비진도
			죽도, 매물도, 소매물도, 가왕도, 장사도
		사량면	상도, 하도, 수우도
	거제시	일운면	지심도, 내도, 외도
		장목면	이수도
		사등면	고개도
		둔덕면	화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노도
		미조면	(미조리)조도, 호도
	창원시	구산면	큰닭섬, 실리도
		진동면	양도, 송도, 수우도
		웅천동	연도, 우도
		태평동	잠도
	고성군	하일면	자란도
		삼산면	와도
제주	제주시	추자면	횡간도, 추포도, 추자도
		한림읍	비양도
		우도면	우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마라도

2.벽지지역(「보험료 경감 고시」 제3조 관련)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강원	홍천군	내면	율전2리	문바위길 119~176, 내린천로 638~704 살둔길, 살둔강변길 9~200
			율전3리	밤바치길, 밤바치길 45번길 밤바치길 431번길, 밤바치길 210번길
			방내2리	여차동길, 여차동길 499번길 여차동길 386번길
			광원리	삼봉휴양길 276
	춘천시	동면	품안리	품안리길
			품걸1리, 품걸2리	품걸길, 야시대로
			신이리	연엽골길, 신이리길, 우무골길
		북산면	내평리	내평길
			부귀리	삼막길 6-4~67, 부귀로 782-8~954, 텃골길
			물로1리	삽다리길, 갈골길
			물로2리	물로길, 절골길
			대동리	대동길
			대곡리	더운샘길
			추전리	북산로 1039~1053, 소양호로 650~652
			청평2리	삼막길 534~663
	횡성군	청일면	(봉명리)안구저비	봉명로 129번길 6～233, 봉명로 227번길 6～68, 봉명로 593번길 1~103
		강림면	(월현1리)덕초현	월안길 215~596, 월안1길 1~113
	강릉시	강동면	(언별1리)단경골	단경로 928-9～1389
		연곡면	(삼산3리)부연동	부연동길 579～1056, 부연동1길 70～96-14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소내, 터골	중봉당골길 1127-85～1159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노곡면	개산리	개산길 430-424 ~ 549-33
		가곡면	(풍곡리)덕품, 삼방, 광업소	덕풍길 984-131 ~ 1113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모리재, 봉두곤리, 발왕동, 지칠지	신기봉산로 670~1424
	속초시	설악동	-	설악산로 1119-542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2리3반)가잔동	부연동길 1303~1459-69, 1459-71
			법수치리	법수치길 548~1176
			면옥치리	면옥치길 127~518, 송이로 1471~1516, 노루골길 384~456
		서면	오색리	대청봉길 1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연포	연포길 530~794
			(운치3리)설논	설론길
		화암면	(북동리)한바위	함바위길
		북평면	(숙암리)단임	단임길 397~1207-53, 숙암장재터길
		임계면	(임계4리)평양촌	평양마을길 178~651, 노루마당길 37~270-47
			(도전2리)내도전	내도전길 460~745
	화천군	화천읍	동촌1리	호음로 473~1322, 운봉동길 35~153
			동촌2리	비수구미길 461-2056, 평화로 2393~3481-90
		간동면	방천1리	신내길, 갓골길, 간척월명로 573-1~1490-69
			방천2리	운수길
	양구군	양구읍	상무룡1리	상무룡로 358~798
			상무룡2리	서호길, 간척월명로 1504~1537 간척월명로 1863번길 327, 남밭길 513
	인제군	인제읍	(귀둔1리)군량동	한석산로 2063~2387
		남면	수산리	수산로 328~1095, 무학길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신월리	신월로, 신월안길
		기린면	진동2리	곰배령길, 설피밭길 조침령로 2092-13~2250
			(방동2리)조경동, 아침가리	방동약수로 677~817
		상남면	미산1리	왕성동길, 내린천로 1130~1875, 개인약수길
		북면	용대리	백담로 1755, 백담로 1925, 백담로 1220
	고성군	간성읍	탑동2리	탑동길 494~724-69, 관대바위길 491
			어천3리	관대바위길 38-18~278, 꽃내마루길 20-20~136 꽃대마을길 48-25~202
			흘2리	흘리령길 95~398, 흘리령1길 60~203
		현내면	마달리	백두대간로 775-19~931-14, 마달1길 1-5~90 마달2길 19~52, 89-3~176, 유천쌍계길 53, 245 건봉사로 747-6~747-12
			명호리	통일전망대로 452~457-3, 동해대로 9375~9386
			사천리	동해대로 9049~9109, 통일전망대로 180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한실	한실길
경남	밀양시	산내면	(용전리)오치마을	용전1길 6-11~422-4, 용전리 1807
		단장면	(고례리)바드리마을	바드리길 385~643-4
		부북면	(대항리)평전마을	평밭길 19~80-13, 화악산길 351~487
		상동면	(도곡리)솔방마을	도곡1길 97-29~162
		무안면	(운정리)노리실마을	운정안길 1-6~200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둔철	둔철산로, 둔철산로438번길, 둔철산로472번길
		오부면	(일물리)일물	방실일물길, 참새미로, 오동로, 오동로598번길
		금서면	(오봉리)오봉	화계오봉로
		시천면	내대리	세석길 217-573
			중산리	지리산대로 320-103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삼장면	유평리	치밭목길 428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백무동로 373
경북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	수도길 865-13~1438
			황점리	황점1길 70-100~807
	안동시	임동면	사월리(보마골)	한절골길 356-384
			(박곡리)지례	지례예술촌길 390~427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영단로 1236-1~1522-4
		부석면	남대리	영부로 847-3~1199-24(남대리) *영부로 1028-10은 제외 영부로890번길 17~236(남대리)
	상주시	외서면	(대전2리)갈골	하나동1길, 하나동2길, 송죽동1길, 송죽동2길, 행복동길, 낙원동길
		은척면	장암2리	수예길 16~132
		화남면	동관2리	평온동관로 379-1~385, 비룡동관로 967~1162 동관2길, 동관3길
	문경시	가은읍	수예리	수예길, 작약로 412~652
		동로면	명전1리	당곡길, 명전길 468~702
		농암면	내서3리	승리동길, 백합동1길, 백합동2길 다락갈골길 220-9~279-72
	경산시	용성면	매남4리	구룡마을길 58길
			매남리	구룡마을길187-9
	청송군	안덕면	근곡리(안낫실)	헌실날실길 397-46~423
		현서면	(무계2리)칠미기	면봉산길 685-1017
	영양군	영양읍	무학리	비리동천길 335~635-28
		석보면	포산리	포산길 280-14~319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수비면	(신암리)새신	새신길 26~225
			(본신리)번동	본신로 95-3~348
	영덕군	강구면	상직3리	직천길 666 ~ 688
		지품면	옥류리	내옥류길, 외옥류길
		축산면	조항리	조항길, 칠성길 843-5~846
	봉화군	소천면	(고선2리)구마동	구마동길 307-45~1518
			남회룡리	개내골길 8, 138, 남회룡로 199~1291
			(두음리)듬골	두음길 528-20~934-16
			(분천1리)풍애	풍애길 258~566-39
			(분천2리)원곡	원곡길 22-37~124, 승부길 1158-158
		재산면	갈산2리(우련전)	개내골길 92~189, 남회룡로 9~79-121 일월산길 14-28~194
		석포면	승부리	승부길 358~1162-55, 마무이길 26~139 교동길 40~142
			(석포1리)반야	반야길 475~895-25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1리, 왕피2리	한내길, 양지길, 동수골길, 거리고길, 병위길, 왕피길 589~1762-8
			(전곡리)원곡	전곡2길
			전내	전곡1길
		근남면	(구산3리)원심	원심길
			오르마	왕피천로 762-1~784
		매화면	(길곡리)내길	길곡길마길 84~240
충북	충주시	앙성면	(영죽리)상영죽마을	상영죽길 111~212-1, 영죽요골길 47~189 영죽고개길 411~644
		산척면	(석천리)명암마을 합천마을, 석문마을	명암길 5~40, 석천길 54~522, 화수길 4~53, 회고길 8~81, 석문길 6~184, 송골길 6~38,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감지역(리·부락)	경감지역(도로명 주소)
				월천길 6~123
	제천시	청풍면	오산리	호반로 2086~2217, 호반로1길
			단돈리	호반로 2686~2866, 호반로3길
			방흥리	호반로 2408~2524
			진목리	호반로 2065, 호반로 2276, 갈골만지길 47~62
전북	임실군	운암면	(금기리)시랑골	금기길 326~342-209
			(청운리)거둔이	청운1길 326~384
			박실	청운2길 82~164
			(월면리)월면	월면길 398-6~422
			(지천리)지천	지천길 180~437-12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와운길 324
전남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칠관로 842-1150
경기	개성시		개성공업지구	개성공업지구

※ 벽지지역 해당 여부가 리·부락에 의할 때와 도로명 주소에 의할 때가 다른 경우나 도로명 주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리·부락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3. 응급의료 취약지역(「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제2조 관련)

구분	지역수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1.인천	2	강화군, 옹진군
2.경기	5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3.강원	15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4.충북	8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충주시
5.충남	11	공주시,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6.전북	9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7.전남	17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8.대구	1	군위군
8.경북	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영덕군, 영주시,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9.경남	14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10.제주	1	서귀포시

별첨3 처방금지 의약품 목록

1.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23.12월 기준)

※ ‘23.12.1. 기준 수입·제조허가받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완제품) 목록으로 일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연번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1	657802511	하나알펜타닐주사_(1mg/2mL)	하나제약(주)
2	651901760	자나팜정1밀리그람(알프라졸람)_(1mg/1정)	명인제약(주)
3	073400470	자낙스정0.25밀리그램(알프라졸람)_(0.25mg/1정)	비아트리스코리아(주)
4	641802680	자이렌정0.25밀리그램(알프라졸람)_(0.25mg/1정)	광동제약(주)
5	645302630	한림알프라졸람정0.25밀리그램_(0.25mg/1정)	한림제약(주)
6	646002040	자세틴정0.25밀리그램(알프라졸람)_(0.25mg/1정)	(주)메디카코리아
7	649501400	아졸락정0.25밀리그람(알프라졸람)_(0.25mg/1정)	유니메드제약(주)
8	649806790	명문알프라졸람정0.25밀리그램_(0.25mg/1정)	명문제약(주)
9	651901730	자나팜정0.25밀리그람(알프라졸람)_(0.25mg/1정)	명인제약(주)
10	653001570	알프라낙스정0.25밀리그람_(알프라졸람, 0.25mg/1정)	(주)한국파마
11	657200470	알프람정0.25밀리그램(알프라졸람)(수출명Alpram Tablet 0.25mg)_(0.25mg/1정)	환인제약(주)
12	657807870	알프라원정0.25밀리그램(알프라졸람)_(0.25mg/1정)	하나제약(주)
13	651901740	자나팜정0.4밀리그람(알프라졸람)_(0.4mg/1정)	명인제약(주)
14	657200480	알프람정0.4밀리그램(알프라졸람)_(0.4mg/1정)	환인제약(주)
15	073400460	자낙스정0.5밀리그램(알프라졸람)_(0.5mg/1정)	비아트리스코리아(주)
16	641802670	자이렌정(알프라졸람)_(0.5mg/1정)	광동제약(주)
17	645303420	한림알프라졸람정0.5밀리그램_(0.5mg/1정)	한림제약(주)
18	649501420	아졸락정0.5밀리그람(알프라졸람)_(0.5mg/1정)	유니메드제약(주)
19	649806800	명문알프라졸람정0.5밀리그램_(0.5mg/1정)	명문제약(주)
20	651901750	자나팜정0.5밀리그람(알프라졸람)_(0.5mg/1정)	명인제약(주)
21	653001580	알프라낙스정0.5밀리그람_(알프라졸람, 0.5mg/1정)	(주)한국파마
22	657200490	알프람정0.5밀리그램(알프라졸람)_(0.5mg/1정)	환인제약(주)
23	657807880	알프라원정0.5밀리그램(알프라졸람)_(0.5mg/1정)	하나제약(주)
24	651904650	자나팜정0.125밀리그램(알프라졸람)_(0.125mg/1정)	명인제약(주)
25	657203960	알프람정0.125밀리그램(알프라졸람)_(0.125mg/1정)	환인제약(주)
26	651900640	명인브로마제팜정3밀리그람[(수출명:로지팜정3밀리그람(브로마제팜), 브라제팜정3밀리그람(브로마제팜), 렉소만정3밀리그람(브로마제팜)]_(3mg/1정)	명인제약(주)
27	678000020	노스판패취10㎍/h(부프레노르핀)_(4.5X6.8㎠/1매)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28	678000030	노스판패취20㎍/h(부프레노르핀)_(7.2X7.2㎠/1매)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29	678000010	노스판패취5㎍/h(부프레노르핀)_(4.5X4.5㎠/1매)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30	678000450	트랜스텍패취52.5μg/h(부프레노르핀)_(7.2X9.7㎠/1매)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31	678000470	트랜스텍패취70μg/h(부프레노르핀)_(7.2X12.2㎠/1매)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32	678000460	트랜스텍패취35μg/h(부프레노르핀)_(7.2X7.2㎠/1매)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33	649807440	부프레인패취35㎍/h(부프레노르핀)_(4.3X5.9㎠/1매)	명문제약(주)

연번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34	649807420	부프레인패취52.5㎍/h(부프레노르핀)_(6.45X5.9㎠/1매)	명문제약(주)
35	649807430	부프레인패취70㎍/h(부프레노르핀)_(8.6X5.9㎠/1매)	명문제약(주)
36	649801911	부토판주사1밀리그람/밀리리터(부토르파놀타르타르산염)_(1mg/1mL)	명문제약(주)
37	649801921	부토판주사2밀리그람/밀리리터(부토르파놀타르타르산염)_(2mg/1mL)	명문제약(주)
38	645302132	포크랄시럽(포수클로랄)_(9.5g/95mL)	한림제약(주)
39	645302133	포크랄시럽(포수클로랄)_(1g/10mL)	한림제약(주)
40	645302135	포크랄시럽(포수클로랄)_(0.5g/5mL)	한림제약(주)
41	657200210	리버티정10밀리그램(클로르디아제폭시드염산염)_(10mg/1정)	환인제약(주)
42	657200200	리버티정5밀리그램(클로르디아제폭시드염산염)_(5mg/1정)	환인제약(주)
43	652100530	센틸정5밀리그람(클로바잠)_(5mg/1정)	(주)한독
44	643308800	리보트릴정(클로나제팜)_(0.5mg/1정)	(주)종근당
45	657202690	환인클로나제팜정0.5밀리그램_(0.5mg/1정)	환인제약(주)
46	649801470	명문인산코데인정_(코데인인산염수화물, 20mg/1정)	명문제약(주)
47	653100790	비씨인산코데인정_(코데인인산염수화물, 20mg/1정)	(주)비씨월드제약
48	657802830	하나인산코데인정_(코데인인산염수화물, 20mg/1정)	하나제약(주)
49	664900030	데코인정(코데인인산염수화물)_(20mg/1정)	성원애드콕제약(주)
50	669800390	구주인산코데인정_(코데인인산염수화물, 20mg/1정)	구주제약(주)
51	651900520	명인디아제팜정10밀리그람_(10mg/1정)	명인제약(주)
52	647800740	삼진디아제팜정2밀리그람_(2mg/1정)	삼진제약(주)
53	651900530	명인디아제팜정2밀리그람_(2mg/1정)	명인제약(주)
54	671800270	대원디아제팜정2밀리그램(수출명:디아잠정2밀리그램)(수출명2:트레즈콘정2밀리그램)_(2mg/1정)	대원제약(주)
55	643308810	바리움정5밀리그람(디아제팜)_(5mg/1정)	(주)종근당
56	647800750	삼진디아제팜정5밀리그람_(5mg/1정)	삼진제약(주)
57	651900540	명인디아제팜정5밀리그람_(5mg/1정)	명인제약(주)
58	647800761	삼진디아제팜주_(10mg/2mL)	삼진제약(주)
59	671800311	대원디아제팜주사액(수출명:데팜주사액(디아제팜))_(10mg/2mL)	대원제약(주)
60	657800350	디코데서방정(디히드로코데인타르타르산염)_(60mg/1정)	하나제약(주)
61	642000510	빅손정1밀리그람(에칠로플라제페이트)_(1mg/1정)	현대약품(주)
62	642000520	빅손정(에칠로플라제페이트)_(2mg/1정)	현대약품(주)
63	643300320	데파스정1밀리그람(에티졸람)_(1mg/1정)	(주)종근당
64	643300310	데파스정0.5밀리그람(에티졸람)_(0.5mg/1정)	(주)종근당
65	643300300	데파스정0.25밀리그램(에티졸람)_(0.25mg/1정)	(주)종근당
66	645304800	펜타덤패취12㎍/h(펜타닐)_(2.5㎠/1매)	한림제약(주)
67	646900090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2㎍/h(펜타닐)_(5.25㎠/1매)	(주)한국얀센
68	649806240	명문펜타닐패취12㎍/h(펜타닐)_(5.25㎠/1매)	명문제약(주)
69	659901030	펜타듀르패취12ug/h(펜타닐)_(5㎠/1매)	(주)한국팜비오
70	645304790	펜타덤패취25㎍/h(펜타닐)_(5㎠/1매)	한림제약(주)
71	646900100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25㎍/h(펜타닐)_(10.5㎠/1매)	(주)한국얀센

연번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72	649806250	명문펜타닐패취25㎍/h(펜타닐)_(10.5㎠/1매)	명문제약(주)
73	659901020	펜타듀르패취25㎍/h(펜타닐)_(10㎠/1매)	(주)한국팜비오
74	645304830	펜타덤패취50㎍/h(펜타닐)_(10㎠/1매)	한림제약(주)
75	646900110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50㎍/h(펜타닐)_(21㎠/1매)	(주)한국얀센
76	649806230	명문펜타닐패취50㎍/h(펜타닐)_(21㎠/1매)	명문제약(주)
77	659901010	펜타듀르패취50㎍/h(펜타닐)_(20㎠/1매)	(주)한국팜비오
78	645305180	펜타덤패취100㎍/h(펜타닐)_(20㎠/1매)	한림제약(주)
79	646901010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100㎍/h(펜타닐)_(42㎠/1매)	(주)한국얀센
80	659900990	펜타듀르패취100㎍/h(펜타닐)_(40㎠/1매)	(주)한국팜비오
81	671805930	펜타릭스패취37.5㎍/h(펜타닐)_(22.5㎠/1매)	대원제약(주)
82	642000770	액틱구강정200마이크로그램(구연산펜타닐)_(0.3142mg/1정)	현대약품(주)
83	653103370	나르코설하정2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_(0.3142mg/1정)	(주)비씨월드제약
84	674900490	앱스트랄설하정2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_(0.3142mg/1정)	한국메나리니(주)
85	642000780	액틱구강정400마이크로그램(구연산펜타닐)_(0.6284mg/1정)	현대약품(주)
86	674900510	앱스트랄설하정4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_(0.6284mg/1정)	한국메나리니(주)
87	642000790	액틱구강정600마이크로그램(구연산펜타닐)_(0.9426mg/1정)	현대약품(주)
88	642000800	액틱구강정800마이크로그램(구연산펜타닐)_(1.2568mg/1정)	현대약품(주)
89	626900400	펜토라박칼정2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_(0.314mg/1정)	(주)한독테바
90	626900410	펜토라박칼정4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_(0.628mg/1정)	(주)한독테바
91	659901100	펜타칸설하정 400마이크로그램 (펜타닐시트르산염)_(0.63mg/1정)	(주)한국팜비오
92	626900420	펜토라박칼정6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_(0.943mg/1정)	(주)한독테바
93	626900430	펜토라박칼정8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_(1.257mg/1정)	(주)한독테바
94	626900390	펜토라박칼정1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_(0.157mg/1정)	(주)한독테바
95	653103320	나르코설하정1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_(0.1571mg/1정)	(주)비씨월드제약
96	674900480	앱스트랄설하정1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_(0.1571mg/1정)	한국메나리니(주)
97	653103380	나르코설하정3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_(0.4713mg/1정)	(주)비씨월드제약
98	674900500	앱스트랄설하정3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_(0.4173mg/1정)	한국메나리니(주)
99	645303281	한림펜타닐주사(구연산펜타닐)_(78.5㎍/1mL)	한림제약(주)
100	649804431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_(78.5㎍/1mL)	명문제약(주)
101	657803211	하나구연산펜타닐주사_(78.5㎍/1mL/앰플)	하나제약(주)
102	645103351	대한펜타닐주사액_(펜타닐시트르산염, 0.1mg/2mL)	대한약품공업(주)
103	645302781	한림펜타닐주사(구연산펜타닐)_(0.157mg/2mL)	한림제약(주)
104	645302783	한림펜타닐주사(펜타닐시트르산염)_(0.157mg/2mL/앰플(PP))	한림제약(주)
105	649800801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_(0.157mg/2mL/앰플)	명문제약(주)
106	649805131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_(0.157mg/2mL/병)	명문제약(주)
107	653100391	비씨펜타닐시트르산염주사_(0.157mg/2mL/앰플)	(주)비씨월드제약
108	653102471	비씨펜타닐시트르산염주사_(0.157mg/2mL/병)	(주)비씨월드제약
109	657802271	하나구연산펜타닐주사_(0.157mg/2mL/앰플)	하나제약(주)

연번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110	657802273	하나구연산펜타닐주사_(0.157mg/2mL/앰플(P))	하나제약(주)
111	669800033	구주구연산펜타닐주사_(0.157mg/2mL)	구주제약(주)
112	669804761	구주펜타닐시트르산염주사(바이알)_(0.157mg/2mL)	구주제약(주)
113	645102991	대한펜타닐주사액_(펜타닐시트르산염, 0.5mg/10mL)	대한약품공업(주)
114	645302791	한림펜타닐주사(구연산펜타닐)_(0.785mg/10mL/앰플)	한림제약(주)
115	645302794	한림펜타닐주사(펜타닐시트르산염)_(0.785mg/10mL/앰플(PP))	한림제약(주)
116	645304081	한림펜타닐주사(구연산펜타닐)_(0.785mg/10mL/병)	한림제약(주)
117	649803851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_(0.785mg/10mL/앰플)	명문제약(주)
118	649805091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_(0.785mg/10mL/병)	명문제약(주)
119	653100411	비씨펜타닐시트르산염주사_(0.785mg/10mL/앰플)	(주)비씨월드제약
120	653102381	비씨펜타닐시트르산염주사_(0.785mg/10mL/병)	(주)비씨월드제약
121	657802281	하나구연산펜타닐주사_(0.785mg/10mL/앰플)	하나제약(주)
122	657802283	하나구연산펜타닐주사_(0.785mg/10mL/앰플(P))	하나제약(주)
123	669800043	구주구연산펜타닐주사_(0.785mg/10mL)	구주제약(주)
124	669804771	구주펜타닐시트르산염주사(바이알)_(0.785mg/10mL)	구주제약(주)
125	671805211	대원펜타닐시트르산염주사액_(0.785mg/10mL)	대원제약(주)
126	645103001	대한펜타닐주사액_(펜타닐시트르산염, 1mg/20mL)	대한약품공업(주)
127	645302801	한림펜타닐주사(구연산펜타닐)_(1.57mg/20mL/앰플)	한림제약(주)
128	645304091	한림펜타닐주사(구연산펜타닐)_(1.57mg/20mL/병)	한림제약(주)
129	645304093	한림펜타닐주사(펜타닐시트르산염)_(1.57mg/20mL/앰플(PP))	한림제약(주)
130	649803861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_(1.57mg/20mL/앰플)	명문제약(주)
131	649805101	명문구연산펜타닐주사_(1.57mg/20mL/병)	명문제약(주)
132	653102391	비씨펜타닐시트르산염주사_(1.57mg/20mL/병)	(주)비씨월드제약
133	657802294	하나구연산펜타닐주사_(1.57mg/20mL/앰플(P))	하나제약(주)
134	669800051	구주구연산펜타닐주사_(1.57mg/20mL)	구주제약(주)
135	653103051	비씨펜타닐시트르산염주사_(2.355mg/30mL)	(주)비씨월드제약
136	657805291	하나구연산펜타닐주사_(2.355mg/30mL)	하나제약(주)
137	659901080	펜타칸설하정 533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_(0.84mg/1정)	(주)한국팜비오
138	659901120	펜타칸설하정 133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_(0.21mg/1정)	(주)한국팜비오
139	659901090	펜타칸설하정 267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_(0.42mg/1정)	(주)한국팜비오
140	651900330	루나팜정(플루니트라제팜)_(1mg/1정)	명인제약(주)
141	657200130	라제팜정(플루니트라제팜)_(1mg/1정)	환인제약(주)
142	642800250	달마돔정(플루라제팜염산염)_(15mg/1정)	고려제약(주)
143	645102291	케토민주10밀리그람/밀리리터(염산케타민)_(0.2307g/20mL)	대한약품공업(주)
144	670604343	휴온스케타민염산염주사50밀리그램/밀리리터(앰플)_(0.2884g/5mL)	(주)휴온스
145	670603583	휴온스케타민염산염주사(수출명 :KESIAInj.,KWANGMYUNGKESIA.Inj.)_(0.5768g/10mL)	(주)휴온스
146	642901160	아티반정1밀리그람(로라제팜)_(1mg/1정)	일동제약(주)
147	651901320	스리반정1밀리그램(로라제팜)_(1mg/1정)	명인제약(주)

연번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148	657200190	로라반정1밀리그램(로라제팜)_(1mg/1정)	환인제약(주)
149	642901150	아티반정0.5밀리그람(로라제팜)_(0.5mg/1정)	일동제약(주)
150	651901310	스리반정0.5밀리그램(로라제팜)_(0.5mg/1정)	명인제약(주)
151	657200180	로라반정0.5밀리그램(로라제팜)_(0.5mg/1정)	환인제약(주)
152	642901181	아티반주사(로라제팜)_(2mg/0.5mL)	일동제약(주)
153	642901191	아티반주사(로라제팜)_(4mg/1mL)	일동제약(주)
154	651903650	메디키넷리타드캡슐10mg(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_(10mg/1캡슐)	명인제약(주)
155	651902300	페로스핀정10밀리그램(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_(10mg/1정)	명인제약(주)
156	657200860	페니드정10밀리그램(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_(10mg/1정)	환인제약(주)
157	651903630	메디키넷리타드캡슐5mg(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_(5mg/1캡슐)	명인제약(주)
158	651904340	페로스핀정5mg(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_(5mg/1정)	명인제약(주)
159	657200850	페니드정5밀리그램(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_(5mg/1정)	환인제약(주)
160	646902360	콘서타OROS서방정18밀리그램(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_(18mg/1정)	(주)한국얀센
161	646902060	콘서타OROS서방정36밀리그램(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_(36mg/1정)	(주)한국얀센
162	651903670	메디키넷리타드캡슐20mg(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_(20mg/1캡슐)	명인제약(주)
163	646902370	콘서타OROS서방정27밀리그램(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_(27mg/1정)	(주)한국얀센
164	651903660	메디키넷리타드캡슐30mg(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_(30mg/1캡슐)	명인제약(주)
165	651903640	메디키넷리타드캡슐40mg(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_(40mg/1캡슐)	명인제약(주)
166	646902070	콘서타OROS서방정54밀리그램(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_(54mg/1정)	(주)한국얀센
167	642200691	부광미다졸람주사_(3mg/3mL)	부광약품(주)
168	657800811	바스캄주(미다졸람)_(3mg/3mL)	하나제약(주)
169	642200701	부광미다졸람주사_(5mg/5mL)	부광약품(주)
170	649801741	미다컴주5밀리그람(미다졸람)_(5mg/5mL)	명문제약(주)
171	657800821	바스캄주(미다졸람)_(5mg/5mL)	하나제약(주)
172	670605401	미졸람주1mg/ml(미다졸람)_(5mg/5mL)	(주)휴온스
173	642200711	부광미다졸람주사15밀리그램/3밀리리터_(15mg/3mL)	부광약품(주)
174	649801721	미다컴주15밀리그람(미다졸람)_(15mg/3mL)	명문제약(주)
175	657800801	바스캄주15밀리그람(미다졸람)	하나제약(주)
176	650500441	제일모르핀염산염주사액_(모르핀염산염수화물, 5mg/0.5mL)	(주)제일제약
177	649801294	명문모르핀염산염수화물주사_(10mg/1mL)	명문제약(주)
178	650500451	제일모르핀염산염주사액_(모르핀염산염수화물, 10mg/1mL)	(주)제일제약
179	657801481	염몰핀주사(모르핀염산염수화물)_(10mg/1mL)	하나제약(주)
180	657801450	엠에스알서방정10밀리그람(황산모르핀)_(모르핀황산염수화물, 10mg/1정)	하나제약(주)
181	657801460	엠에스알서방정30밀리그램(모르핀황산염수화물)_(30mg/1정)	하나제약(주)
182	657802960	황몰핀정(모르핀황산염수화물)_(15mg/1정)	하나제약(주)
183	664900410	에스몰핀정(모르핀황산염수화물)_(15mg/1정)	성원애드콕제약(주)
184	653103641	비씨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1mg/mL(바이알)_(1mg/1mL)	(주)비씨월드제약
185	653101951	비씨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10mg_(10mg/1mL)	(주)비씨월드제약

연번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186	657805711	황몰핀주사10mg/mL(모르핀황산염수화물)_(10mg/1mL)	하나제약(주)
187	669805901	구주황산모르핀주사10mg/ml(모르핀황산염수화물)_(10mg/1mL)	구주제약(주)
188	645302943	한림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_(5mg/5mL)	한림제약(주)
189	649803891	스토몰주사1밀리그람/밀리리터(모르핀황산염수화물)_(5mg/5mL)	명문제약(주)
190	653103651	비씨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1mg/mL(바이알)_(5mg/5mL)	(주)비씨월드제약
191	657803031	황몰핀주사1밀리그람/밀리리터(모르핀황산염수화물)_(5mg/5mL)	하나제약(주)
192	653101941	비씨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15mg/ml_(15mg/1mL)	(주)비씨월드제약
193	669805891	구주황산모르핀주사15mg/ml(모르핀황산염수화물)_(15mg/1mL)	구주제약(주)
194	649802161	스토몰주사20밀리그람(모르핀황산염수화물)_(20mg/2mL)	명문제약(주)
195	653101681	하이몰주사20밀리그람(황산모르핀)_(20mg/2mL)	(주)비씨월드제약
196	669805931	구주황산모르핀주사10mg/ml(모르핀황산염수화물)_(20mg/2mL)	구주제약(주)
197	653102591	비씨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15mg/ml_(30mg/2mL)	(주)비씨월드제약
198	657804871	황몰핀주사15mg/mL(모르핀황산염수화물)_(30mg/2mL)	하나제약(주)
199	669805961	구주황산모르핀주사15mg/ml(모르핀황산염수화물)_(30mg/2mL)	구주제약(주)
200	649803881	스토몰주사1밀리그람/밀리리터(모르핀황산염수화물)_(10mg/10mL)	명문제약(주)
201	653103101	비씨모르핀황산염수화물주사10mg(바이알)_(0.1g/10mL)	(주)비씨월드제약
202	669805951	구주황산모르핀주사10mg/ml(모르핀황산염수화물)_(0.1g/10mL)	구주제약(주)
203	649800051	날페인주사10밀리그램(날부핀염산염)_(10mg/1mL)	명문제약(주)
204	657802531	하나염산날부핀주10밀리그람_(10mg/1mL)	하나제약(주)
205	645301221	엔토발주100밀리그람(펜토바르비탈나트륨)_(0.1g/2mL)	한림제약(주)
206	650500481	제일페티딘염산염주사액_(25mg/0.5mL)	(주)제일제약
207	657802741	하나염산페치딘주사_(25mg/0.5mL)	하나제약(주)
208	649801381	명문염산페치딘주사_(50mg/1mL)	명문제약(주)
209	650500491	제일페티딘염산염주사액_(50mg/1mL)	(주)제일제약
210	653100771	비씨염산페치딘주사액_(50mg/1mL)	(주)비씨월드제약
211	657802751	하나염산페치딘주사_(50mg/1mL)	하나제약(주)
212	671800771	대원염산페치딘주사액_(50mg/1mL)	대원제약(주)
213	657802870	하나페노바르비탈정_(30mg/1정)	하나제약(주)
214	650500841	제일페노바르비탈주사액(페노바르비탈나트륨)_(0.1g/1mL)	(주)제일제약
215	657804561	아네폴주사(프로포폴)_(50mg/5mL)	하나제약(주)
216	653403541	포폴주사(프로포폴)(앰플)_(80mg/8mL)	동국제약(주)
217	657804571	아네폴주사(프로포폴)_(80mg/8mL)	하나제약(주)
218	659901851	프로바이브주1%(프로포폴)(PROVIVE1%(propofol))_(0.1g/10mL)	(주)한국팜비오
219	653402351	포폴주사(프로포폴)(앰플)_(0.12g/12mL)	동국제약(주)
220	657804591	아네폴주사(프로포폴)_(0.12g/12mL)	하나제약(주)
221	671805073	프리폴-엠시티주(프로포폴)_(0.12g/12mL)	대원제약(주)
222	650901871	프레조폴엠시티1%주(프로포폴)(앰플)_(0.15g/15mL)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223	650902071	프레조폴엠시티1%주(프로포폴)(바이알)_(0.15g/15mL)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연번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224	671805661	프리폴-엠시티주(프로포폴)_(0.15g/15mL)	대원제약(주)
225	650901851	프레조폴엠시티1%주(프로포폴)(앰플)_(0.2g/20mL)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226	650902041	프레조폴엠시티1%주(프로포폴)(바이알)_(0.2g/20mL)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227	653402371	포폴주사(프로포폴)(앰플)_(0.2g/20mL)	동국제약(주)
228	657804611	아네폴주사(프로포폴)_(0.2g/20mL)	하나제약(주)
229	667400821	비.브라운프로포폴-리푸로1%주(앰플)_(0.2g/20mL)	비브라운코리아(주)
230	671805083	프리폴-엠시티주(프로포폴)_(0.2g/20mL)	대원제약(주)
231	650901861	프레조폴엠시티1%주(프로포폴)(바이알)_(0.5g/50mL)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232	653402331	포폴주사(프로포폴)(바이알)_(0.5g/50mL)	동국제약(주)
233	667400811	비.브라운 프로포폴-리푸로1%주_(0.5g/50mL)	비브라운코리아(주)
234	671805092	프리폴-엠시티주(프로포폴)_(0.5g/50mL)	대원제약(주)
235	650901841	프레조폴엠시티2%주(프로포폴)(바이알)_(1g/50mL)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236	671805811	프리폴-엠시티주2%(프로포폴)_(1g/50mL)	대원제약(주)
237	653101031	수펜탈주사50마이크로그람/밀리리터(구연산수펜타닐)_(75㎍/1mL)	(주)비씨월드제약
238	653101021	수펜탈주사50마이크로그람/밀리리터(구연산수펜타닐)_(0.375mg/5mL)	(주)비씨월드제약
239	651901770	졸민정0.125밀리그람(트리아졸람)_(0.125mg/1정)	명인제약(주)
240	657202920	트리람정0.125밀리그램(트리아졸람)_(0.125mg/1정)	환인제약(주)
241	651901780	졸민정0.25밀리그램(트리아졸람)_(0.25mg/1정)	명인제약(주)
242	657200830	트리람정0.25밀리그램(트리아졸람)_(0.25mg/1정)	환인제약(주)
243	642801200	졸피움정(졸피뎀타르타르산염)_(10mg/1정)	고려제약(주)
244	643502320	졸피드정10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_(10mg/1정)	한미약품(주)
245	649507420	스립정10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_(10mg/1정)	유니메드제약(주)
246	649806810	스틸렉스정10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_(10mg/1정)	명문제약(주)
247	651901790	졸피신정10mg(졸피뎀타르타르산염)_(10mg/1정)	명인제약(주)
248	652100640	스틸녹스정10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_(10mg/1정)	(주)한독
249	653003460	파마주석산졸피뎀정(졸피뎀타르타르산염)_(10mg/1정)	(주)한국파마
250	657200670	졸피람정10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_(10mg/1정)	환인제약(주)
251	668100180	산도스졸피뎀정10mg(주석산졸피뎀)_(10mg/1정)	한국산도스(주)
252	643507160	졸피드정5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_(5mg/1정)	한미약품(주)
253	649507410	스립정5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_(5mg/1정)	유니메드제약(주)
254	651904470	졸피신정5mg(졸피뎀타르타르산염)_(5mg/1정)	명인제약(주)
255	652100660	스틸녹스CR정6.25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_(6.25mg/1정)	(주)한독
256	652100650	스틸녹스CR정12.5밀리그램(졸피뎀타르타르산염)_(12.5mg/1정)	(주)한독
257	642800500	리브락스정_(1정)	고려제약(주)
258	649802260	씨・아이・에이캡슐_(1캡슐)	명문제약(주)
259	657801830	코노펜캡슐_(1캡슐)	하나제약(주)
260	664900120	마이폴캡슐_(1캡슐)	성원애드콕제약(주)
261	669802710	타코펜캡슐_(1캡슐)	구주제약(주)

연번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262	657805210	오코돈서방정4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_(40mg/1정)	하나제약(주)
263	678000110	옥시콘틴서방정4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_(40mg/1정)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264	649506120	아이알코돈정1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_(10mg/1정)	유니메드제약(주)
265	657805890	오코돈정1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_(10mg/1정)	하나제약(주)
266	657805140	오코돈서방정1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_(10mg/1정)	하나제약(주)
267	678000090	옥시콘틴서방정1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_(10mg/1정)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268	649508050	아이알코돈정2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_(20mg/1정)	유니메드제약(주)
269	657805150	오코돈서방정2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_(20mg/1정)	하나제약(주)
270	678000100	옥시콘틴서방정2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_(20mg/1정)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271	649501370	아이알코돈정5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_(5mg/1정)	유니메드제약(주)
272	657801500	오코돈정_(옥시코돈염산염, 5mg/1정)	하나제약(주)
273	678000160	옥시콘틴서방정80mg(옥시코돈염산염)_(80mg/1정)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274	657806061	오코돈주사10mg/mL(옥시코돈염산염)_(10mg/1mL)	하나제약(주)
275	678000171	옥시넘주사10mg/ml(옥시코돈염산염)_(10mg/1mL)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276	657806031	오코돈주사10mg/mL(옥시코돈염산염)_(20mg/2mL)	하나제약(주)
277	678000201	옥시넘주사10mg/ml(옥시코돈염산염)_(20mg/2mL)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278	657800360	딜리드정2밀리그램(히드로모르폰염산염)_(2mg/1정)	하나제약(주)
279	657800401	딜리드주1밀리그람(히드로모르폰염산염)_(1mg/1mL)	하나제약(주)
280	657800411	딜리드주2밀리그람(히드로모르폰염산염)_(2mg/1mL)	하나제약(주)
281	645305031	울티안주1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_(1.1mg/1병)	한림제약(주)
282	649807041	도미덴주1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_(1.1mg/1병)	명문제약(주)
283	650901991	카비레미펜타닐주 1mg(레미펜타닐염산염)_(1.1mg/1병)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284	653102861	티바레주1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_(1.1mg/1병)	(주)비씨월드제약
285	653301071	울티바주1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_(1.1mg/1병)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
286	655403961	울티펜주1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_(1.097mg/1병)	일성신약(주)
287	657805381	레미바주1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_(1.1mg/1병)	하나제약(주)
288	645305041	울티안주2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_(2.21mg/1병)	한림제약(주)
289	649807051	도미덴주2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_(2.2mg/1병)	명문제약(주)
290	650902011	카비레미펜타닐주 2mg(레미펜타닐염산염)_(2.2mg/1병)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291	653102871	티바레주2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_(2.2mg/1병)	(주)비씨월드제약
292	653301091	울티바주2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_(2.21mg/1병)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
293	655403951	울티펜주2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_(2.194mg/1병)	일성신약(주)
294	657805391	레미바주2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_(2.21mg/1병)	하나제약(주)
295	645305051	울티안주5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_(5.53mg/1병)	한림제약(주)
296	649807061	도미덴주5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_(5.5mg/1병)	명문제약(주)
297	650902001	카비레미펜타닐주 5mg(레미펜타닐염산염)_(5.5mg/1병)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298	653102881	티바레주5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_(5.53mg/1병)	(주)비씨월드제약
299	653301081	울티바주5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_(5.53mg/1병)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

연번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300	655403971	울티펜주5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_(5.485mg/1병)	일성신약(주)
301	657805401	레미바주5밀리그램(레미펜타닐염산염)_(5.53mg/1병)	하나제약(주)
302	644912101	펜토탈소디움주사0.25그램(치오펜탈나트륨)_(0.265g/1병)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303	644912121	펜토탈소디움0.5그램주(치오펜탈나트륨)_(0.53g/1병)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304	678000220	타진서방정 5/2.5mg_(1정)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305	678000210	타진서방정 40/20mg_(1정)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306	653102610	하이코돈정5.0밀리그램_(1정)	(주)비씨월드제약
307	653102620	하이코돈정7.5밀리그램_(1정)	(주)비씨월드제약
308	678000180	타진서방정 10/5mg_(1정)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309	678000190	타진서방정 20/10mg_(1정)	한국먼디파마유한회사
310	646902230	뉴신타아이알정50밀리그램(타펜타돌염산염)_(58.24mg/1정)	(주)한국얀센
311	646902110	뉴신타서방정50밀리그램(타펜타돌염산염)_(58.24mg/1정)	(주)한국얀센
312	646902120	뉴신타서방정100밀리그램(타펜타돌염산염)_(0.11648g/1정)	(주)한국얀센
313	646902240	뉴신타서방정200밀리그램(타펜타돌염산염)_(0.23296g/1정)	(주)한국얀센
314	641605801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5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_(0.5mg/10회)	(주)대웅제약
315	641605781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1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_(1mg/10회)	(주)대웅제약
316	641605791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2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_(2mg/10회)	(주)대웅제약
317	674900551	팩펜트나잘스프레이1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_(0.8mg/8회)	한국메나리니(주)
318	674900561	팩펜트나잘스프레이400마이크로그램(펜타닐시트르산염)_(3.2mg/8회)	한국메나리니(주)
319	678000480	타진서방정80/40mg_(1정)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
320	642404880	영진조피클론정1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_(1mg/1정)	영진약품(주)
321	651904900	조스정1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_(1mg/1정)	명인제약(주)
322	653006720	파마에스조피클론정1mg_(1mg/1정)	(주)한국파마
323	657807770	에조스타정1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_(1mg/1정)	하나제약(주)
324	670608170	조피스타정1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_(1mg/1정)	(주)휴온스
325	642404890	영진조피클론정2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_(2mg/1정)	영진약품(주)
326	651904910	조스정2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_(2mg/1정)	명인제약(주)
327	653006710	파마에스조피클론정2mg_(2mg/1정)	(주)한국파마
328	657807790	에조스타정2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_(2mg/1정)	하나제약(주)
329	670608180	조피스타정2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_(2mg/1정)	(주)휴온스
330	642404900	영진조피클론정3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_(3mg/1정)	영진약품(주)
331	651904920	조스정3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_(3mg/1정)	명인제약(주)
332	653006730	파마에스조피클론정3mg_(3mg/1정)	(주)한국파마
333	657807780	에조스타정3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_(3mg/1정)	하나제약(주)
334	670608190	조피스타정3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_(3mg/1정)	(주)휴온스
335	664000471	에피디올렉스내복액_(10g/100mL)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336	642204620	잘레딥캡슐5밀리그램(잘레플론)_(5mg/1캡슐)	부광약품(주)
337	642204630	잘레딥캡슐10밀리그램(잘레플론)_(10mg/1캡슐)	부광약품(주)

연번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338	669800201	구주알펜타닐주(염산알펜타닐)_(1.13mg/2mL)	구주제약(주)
339	648900680	자낙스XR정1mg(알프라졸람)_(1mg/1정)	한국화이자제약(주)
340	646002030	자세틴정0.25밀리그람(알프라졸람)(수출명:ANEX0.25mg(Alprazolam))_(0.25mg/1정)	(주)메디카코리아
341	657202590	알프람정0.25밀리그램(알프라졸람)(Alpram Tablet 0.25mg)_(0.25mg/1정)	환인제약(주)
342	657202600	알프람정0.4밀리그램(알프라졸람)(Alpram Tablet 0.4mg)_(0.4mg/1정)	환인제약(주)
343	657202610	알프람정0.5밀리그램(알프라졸람)(Alpram Tablet 0.5mg)_(0.5mg/1정)	환인제약(주)
344	651900310	로지팜정3밀리그람(브로마제팜), 브라제팜정3밀리그람(브로마제팜), 렉소만정3밀리그람(브로마제팜)_(3mg/1정)	명인제약(주)
345	652100520	센틸정10밀리그람(클로바잠)_(10mg/1정)	(주)한독
346	652101540	푸리지움10밀리그람(클로바잠)영문:Frisium10mg_(10mg/1정)	(주)한독
347	652101530	푸리지움5밀리그람(클로바잠)_(5mg/1정)	(주)한독
348	642000810	액틱구강정1200마이크로그램(구연산펜타닐)_(1.8852mg/1정)	현대약품(주)
349	642000820	액틱구강정1600마이크로그램(구연산펜타닐)_(2.5136mg/1정)	현대약품(주)
350	645103511	대한펜타닐주사액_(50㎍/1mL)	대한약품공업(주)
351	671805191	대원펜타닐시트르산염주사액_(78.5㎍/1mL)	대원제약(주)
352	645103221	대한펜타닐주사액_(1.5mg/30mL)	대한약품공업(주)
353	669800271	구주염산모르핀주_(5mg/0.5mL)	구주제약(주)
354	669800281	구주염산모르핀주_(10mg/1mL)	구주제약(주)
355	649802151	스토몰주사1밀리그람/밀리리터(모르핀황산염수화물)_(1mg/1mL)	명문제약(주)
356	671805461	대원모르핀황산염주사액1mg/mL(바이알)_(1mg/1mL)	대원제약(주)
357	657804881	황몰핀주사15mg/mL(모르핀황산염수화물)_(45mg/3mL)	하나제약(주)
358	671805481	대원모르핀황산염주사액1mg/mL(바이알)_(15mg/15mL)	대원제약(주)
359	650500851	제일펜타조신주사액_(30mg/1mL)	(주)제일제약
360	669800311	구주염산페치딘주_(25mg/0.5mL)	구주제약(주)
361	669800321	구주염산페치딘주_(50mg/1mL)	구주제약(주)
362	650501331	제일페노바르비탈주사액(페노바르비탈나트륨)(앰플)_(0.1g/1mL)	(주)제일제약
363	653403581	포폴주사(프로포폴)(바이알)_(80mg/8mL)	동국제약(주)
364	650902091	프레조폴엠시티1%주(프로포폴)(앰플)_(0.1g/10mL)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365	653403551	포폴주사(프로포폴)(바이알)_(0.12g/12mL)	동국제약(주)
366	653402361	포폴주사(프로포폴)(앰플)_(0.15g/15mL)	동국제약(주)
367	653402291	포폴주사(프로포폴)(바이알)_(0.2g/20mL)	동국제약(주)
368	667400841	비.브라운 프로포폴-리푸로1%주_(0.2g/20mL)	비브라운코리아(주)
369	650902121	프레조폴엠시티프리필드주1%(프로포폴)_(0.5g/50mL)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370	653402341	포폴주사(프로포폴)(바이알)_(1g/100mL)	동국제약(주)
371	650902131	프레조폴엠시티프리필드주2%(프로포폴)_(1g/50mL)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372	657805751	아네폴주사(프로포폴)_(0.18g/18mL)	하나제약(주)
373	622700591	삼양홀딩스수펜타닐주사(구연산수펜타닐)_(75㎍/1mL)	(주)삼양홀딩스
374	657802431	하나수펜타닐주사50마이크로그람/밀리그람(구연산수펜타닐)_(75㎍/1mL)	하나제약(주)

연번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375	622700611	삼양홀딩스수펜타닐주사(구연산수펜타닐)_(0.375mg/5mL)	(주)삼양홀딩스
376	657803961	하나수펜타닐주사50마이크로그람/밀리그람(구연산수펜타닐)_(0.375mg/5mL)	하나제약(주)
377	622700601	삼양홀딩스수펜타닐주사(구연산수펜타닐)_(0.15mg/2mL)	(주)삼양홀딩스
378	657802441	하나수펜타닐주사50마이크로그람/밀리그람(구연산수펜타닐)_(0.15mg/2mL)	하나제약(주)
379	654000170	레스피렌정 37.5밀리그람(지페프롤염산염)_(37.5mg/1정)	아주약품(주)
380	651602021	레스피렌시럽 5밀리그람/밀리리터(지페프롤염산염)_(5g/1000mL)	한화제약(주)
381	649502880	유니콘틴콤플렉스정_(1정)	유니메드제약(주)
382	657800380	딜리드정8밀리그램(히드로모르폰염산염)_(8mg/1정)	하나제약(주)
383	641801570	마자놀정(마진돌)_(1mg/1정)	광동제약(주)
384	052401900	디에칠정(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_(25mg/1정)	(주)인트로바이오파마
385	622802310	엠피온정(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_(25mg/1정)	(주)마더스제약
386	643100130	디피온정(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_(25mg/1정)	(주)바이넥스
387	644600740	암페몬정(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_(25mg/1정)	조아제약(주)
388	644801400	에닝정(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_(25mg/1정)	태극제약(주)
389	649104390	슬리피온정(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_(25mg/1정)	한국휴텍스제약(주)
390	649800420	레노씬정(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_(25mg/1정)	명문제약(주)
391	652604880	테뉴에이트정(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_(25mg/1정)	알보젠코리아(주)
392	653006570	엘피온정25밀리그램(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_(25mg/1정)	(주)한국파마
393	670601800	웰피온정(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_(25mg/1정)	(주)휴온스
394	698003160	레피온정(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_(25mg/1정)	(주)제뉴파마
395	641802190	아트라진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_(35mg/1정)	광동제약(주)
396	643101900	펜디씬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_(35mg/1정)	(주)바이넥스
397	644101260	펜디예뜨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_(35mg/1정)	제이더블유신약(주)
398	644600840	엔슬림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_(35mg/1정)	조아제약(주)
399	644802850	페닝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_(35mg/1정)	태극제약(주)
400	645203630	펜디펜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_(35mg/1정)	에이프로젠제약(주)
401	646202160	펜디라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_(35mg/1정)	(주)뉴젠팜
402	649400210	다이트린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_(35mg/1정)	영일제약(주)
403	649803390	펜타씬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_(35mg/1정)	명문제약(주)
404	652604860	푸링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_(35mg/1정)	알보젠코리아(주)
405	652903160	펜디진정35mg(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_(35mg/1정)	(주)서울제약
406	653001360	아드펜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_(35mg/1정)	(주)한국파마
407	654800080	라이트진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_(35mg/1정)	(주)한국비엠아이
408	657802840	펜슬림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_(35mg/1정)	하나제약(주)
409	658200200	디에트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_(35mg/1정)	(주)비보존제약
410	663603200	펜디멘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_(35mg/1정)	한국프라임제약(주)
411	669803310	펜디민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_(35mg/1정)	구주제약(주)
412	669904170	펜틴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_(35mg/1정)	대한뉴팜(주)

연번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413	670102080	페티노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_(35mg/1정)	(주)팜젠사이언스
414	670602380	펜디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_(35mg/1정)	(주)휴온스
415	671701750	펜트라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_(35mg/1정)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416	671803300	펜디라진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_(35mg/1정)	대원제약(주)
417	698001390	펜홀드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_(35mg/1정)	(주)제뉴파마
418	652606270	푸링세미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_(17.5mg/1정)	알보젠코리아(주)
419	670607630	펜디세미정(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_(17.5mg/1정)	(주)휴온스
420	622802050	아트민정(펜터민염산염)_(37.5mg/1정)	(주)마더스제약
421	628800800	펜타지아정(펜터민염산염)_(37.5mg/1정)	(주)휴비스트제약
422	641601110	디에타민정(수출명:DIETOP)(염산펜터민)_(37.5mg/1정)	(주)대웅제약
423	641601120	디에타민정(펜터민염산염)_(37.5mg/1정)	(주)대웅제약
424	641802050	아디펙스정(펜터민염산염)_(37.5mg/1정)	광동제약(주)
425	642902420	펜타인정(펜터민염산염)_(37.5mg/1정)	일동제약(주)
426	643101910	펜트민정(펜터민염산염)_(37.5mg/1정)	(주)바이넥스
427	644100640	펜터미정(펜터민염산염)_(37.5mg/1정)	제이더블유신약(주)
428	644600690	씬스펜정(펜터민염산염)_(37.5mg/1정)	조아제약(주)
429	644802840	페니민정(펜터민염산염)_(37.5mg/1정)	태극제약(주)
430	645202640	틴틴정(펜터민염산염)_(37.5mg/1정)	에이프로젠제약(주)
431	645603900	대화노브제정(펜터민염산염)_(37.5mg/1정)	대화제약(주)
432	646001540	슬레민정(펜터민염산염)_(37.5mg/1정)	(주)메디카코리아
433	649402670	펜민정(펜터민염산염)_(37.5mg/1정)	영일제약(주)
434	649500530	로우칼정(펜터민염산염)_(37.5mg/1정)	유니메드제약(주)
435	649800430	레디펜정(펜터민염산염)_(37.5mg/1정)	명문제약(주)
436	651902290	페딘정(펜터민염산염)_(37.5mg/1정)	명인제약(주)
437	652604870	푸리민정37.5밀리그램(펜터민염산염)_(37.5mg/1정)	알보젠코리아(주)
438	652901440	웰트민정(펜터민염산염)_(37.5mg/1정)	(주)서울제약
439	654800890	비엠진정(펜터민염산염)_(37.5mg/1정)	(주)한국비엠아이
440	658200310	레티스정(펜터민염산염)_(37.5mg/1정)	(주)비보존제약
441	663603190	펜더정(펜터민염산염)_(37.5mg/1정)	한국프라임제약(주)
442	669801040	메타맥스정(펜터민염산염)_(37.5mg/1정)	구주제약(주)
443	669904160	페스틴정(펜터민염산염)_(37.5mg/1정)	대한뉴팜(주)
444	670100310	로페트정(펜터민염산염)_(37.5mg/1정)	(주)팜젠사이언스
445	670603980	휴터민정(펜터민염산염)_(37.5mg/1정)	(주)휴온스
446	671701310	케이터민정(펜터민염산염)_(37.5mg/1정)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447	671803320	펜키니정(펜터민염산염)_(37.5mg/1정)	대원제약(주)
448	698001380	비터펜정(펜터민염산염)_(37.5mg/1정)	(주)제뉴파마
449	642204430	판베시서방캡슐 30밀리그램(펜터민염산염)_(30mg/1캡슐)	부광약품(주)
450	641805180	아디펙스정18.75mg(펜터민염산염)_(18.75mg/1정)	광동제약(주)
451	644102430	펜터미세미정(펜터민염산염)_(18.75mg/1정)	제이더블유신약(주)
452	652604900	푸리민정18.75밀리그램(펜터민염산염)_(18.75mg/1정)	알보젠코리아(주)
453	669905860	피티엠정(펜터민염산염)_(18.75mg/1정)	대한뉴팜(주)
454	670606670	휴터민세미정(펜터민염산염)_(18.75mg/1정)	(주)휴온스

연번	품목기준코드	제품명	업체명
455	651900190	울란정15밀리그램(쿠아제팜)_(15mg/1정)	명인제약(주)
456	651900200	울란정20밀리그램(쿠아제팜)_(20mg/1정)	명인제약(주)
457	641501121	코푸앤콜드릴리프어덜트디엠시럽_(120mL)	맥널티제약(주)
458	657203680	조피타정1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_(1mg/1정)	환인제약(주)
459	657203670	조피타정2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_(2mg/1정)	환인제약(주)
460	657203660	조피타정3밀리그램(에스조피클론)_(3mg/1정)	환인제약(주)
461	652606610	큐시미아캡슐7.5mg/46mg_(1캡슐)	알보젠코리아(주)
462	652606600	큐시미아캡슐3.75mg/23mg_(1캡슐)	알보젠코리아(주)
463	652606580	큐시미아캡슐15mg/92mg_(1캡슐)	알보젠코리아(주)
464	652606590	큐시미아캡슐11.25mg/69mg_(1캡슐)	알보젠코리아(주)
465	646902341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에스케타민염산염)_(32.3mg/0.2mL)	(주)한국얀센
466	657807451	바이파보주50밀리그램(레미마졸람베실산염)_(69.37mg/1병)	하나제약(주)
467	657807641	바이파보주20밀리그램(레미마졸람베실산염)_(28.22mg/1병)	하나제약(주)

2. 오남용 우려 의약품(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구분	품목(성분)현황
발기부전 치료제 (9개 성분)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실데나필 함유제제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함유제제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아포모르핀 함유제제
	·타다라필 함유제제
	·바데나필 함유제제
	·유데나필 함유제제
	·미로데나필 함유제제
	·아바나필 함유제제
조루치료제 (2개 성분)	·다폭세틴 함유제제
	·조루치료용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
이뇨제 (1개 성분)	·푸로세미드 함유제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10개 성분)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
전신마취제 (1개 성분)	에토미데이트 함유제제

3. 기타

□ 사후피임약(2개 성분)

○ 레보노르게스트렐(0.75mg, 1.5mg), 울리프리스탈(30mg) 함유제제